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면적기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
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바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사목을 바목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 증)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 고 규칙 별표5의2에 따른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 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.	제9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 증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적용 대상 :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~ 마. (생 략) 바. <u>규칙 별표5의2 제5호 가</u> <u>목에 따른 세대원수별 공</u> <u>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여</u> <u>거주하는 사람</u> 사. (생 략)	1. -----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2. 부과 방법 가. ~ 다. (생 략) 라. <u>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</u> <u>사람 : 제4조 및 제5조에</u> <u>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</u> <u>표준임대료에 제3호 다목</u> <u>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</u> <u>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</u> <u>임대료로 부과. 다만 세대</u>	바. (현행 사목과 같음) 2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<u>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기 준면적 초과시 해당 세대 원수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.</u> 마.·바. (생 략) 3. 할증 비율 가.·나. (생 략) <u>다.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 과정도에 따른 할증 비율</u>	라.·마. (현행 마목 및 바목 과 같음) 3.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-	--